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67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8월 02일
발 의 자 : 박 석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춘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영실,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5명)

1. 제안이유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근거 법령인 본 조례에는 해당 사업이 빠져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공사의 설립목적과 직접 관계된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빈집 사업 취득세 감면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1조(사업) ①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1. (생 략)	22. (현행 제21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